



인도네시아 이전가격 안내 2020 년 4 월호

인도네시아는 사전가격 승인(Advanced Pricing Agreement)에 대한 개정 지침을 발표했다.

작년에 개정된 상호합의 절차 (MAP) 규정이 발행 된 후 (2019 년 5 월 Tax Alert 참조) 재무부 장관은 최근 사전가격 승인 (“APA”) 이행 지침에 관한 새로운 규정 No.22 / PMK.03 / 2020(“PMK-22”)을 발행했다.

PMK-22 는 APA 규정을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 및 G20 의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14 호의 광범위한 목표와 일치시키고, APA 프로세스에 관련된 납세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높이는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APA 신청 절차, 기간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들이 이에 해당된다.

2020 년 3 월 18 일부터 PMK-22 는 이전 APA 규정을 대체하며 보류 중이거나 진행중인 모든 APA 신청에 적용된다. 본 안내는 새로운 APA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1. APA 의 확대된 범위

이 새로운 지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PMK-22 는 다음과 같이 APA 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 a. 쌍방 및 일방 APA 의 적용 기간을 5 년으로 연장한다 (이전 규정하에서 일방인 경우 3 년, 쌍방 APA 는 4 년);
- b. 특정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어지는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함) APA 에서 이전 연도를 커버할 수 있는 롤백 조항을 다시 도입한다; 또한
 - a. 납세자가 국내 거래를 APA 에 포함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최근 국내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조사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거래가 많은 국내 비즈니스 그룹의 우려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는 반가운 설명이다.

2. APA 롤백

위에서 언급했듯이 PMK-22 는 일방 및 양방 APA 의 롤백을 다시 도입한다. 이는 환영받는 변경으로, 인도네시아 APA 프레임 워크를 BEPS 14 조의 최소 기준에 맞추고 공개 (조사받지 않은) 회계 연도의 잠재적인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PMK-22 는 롤백을 적용하기 위해 제안된 연도에 다음 조건을 부과한다:

- a. 특수관계자 거래의 사실 및 조건은 APA 에서 다루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사실 및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 b.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음;
- c. 해당 연도의 법인 소득세 ("CIT") 세무조사 통지서가 발행되지 않음; 또한
- d. 납세자는 조세 범죄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있지 않음.

현행 소득세 법의 제한 규정을 고려할 때, 이 새로운 규정 하에서 최대 5 년 동안 APA 롤백을 가정할 수 있다.

3. APA 신청을 위한 추가 조건

이전 APA 규정은 최소 3 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APA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PMK-22 는 아래와 같은 추가 조건을 부과하고 있음.

- a. 납세자는 APA 신청 전에 지난 3 년 동안 CIT 신고서 제출;
- b. 납세자는 APA 신청 전에 지난 3 년 동안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을 준비하고 유지했음;
- c. 납세자는 조세 범죄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지 않았음;
- d. 납세자는 APA 신청 이전 3 년간 회계 연도의 연간 CIT 신고서에서, APA 에 포함되도록 제안된 특수관계자 거래 및 특수관계자를 신고했음;
- e. 제안된 이전가격은 정상가격원칙 ("ALP")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납세자의 영업 이익을 과거 3 회계 연도의 연간 CIT 신고서상의 영업 이익보다 낮게 만들지 않음.

당연히 이 규정은 납세자들이 과거 기간동안 이전 가격 요건을 준수해왔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 규정은 APA 에 따른 계약이 이전 3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세무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4. 간소화 된 신청 절차

주목할만한 또 다른 개정 사항은 PMK-22 가 APA 신청 절차를 단순화했다는 것이다. PMK-22 하의 단일 단계 신청서는 APA 신청서로 구성되고 APA 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요구한다.

- a. 해당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ALP 적용 요약;
- b. 지난 3 년간의 ALP 적용 내역;
- c. 지난 5 회계 연도의 세무 조사 단계에서 세금 이의 신청 단계까지 관련 이전가격 분쟁 이력과 손익계산서; 및
- d. 제안된 APA 기간의 예상 손익 계산서.

이러한 신청서에는 납세자가 APA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기꺼이 제출할 것이며 APA 를 준수 할 것이라는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국세청 (“DGT”)이 신청서 수락을 확인하면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특히 지난 3 회계 연도에 대한 감사받은 재무 제표, 지난 3 회계 연도의 이전 가격 문서 및 APA 에서 다루기로 제안된 각각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ALP 적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 된 문서를 포함한다.

그 후, DGT 는 현장 방문, 사실 검증, 회의 / 인터뷰 등과 같은 테스트(material testing)를 수행하여 유효성을 검사한다. 또한 DGT 는 APA 신청 이전 3 회계 연도 내에 APA 에 포함된 특수관계자 거래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APA 신청이 롤백 연도를 다루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지시 할 수 있다.

APA 협상의 결과는, 일방 APA 의 경우 APA 문서, 쌍방 APA 의 경우 상호 합의의 형태이다.

5. 타임 바운드 프로세스

PMK-22 는 APA 신청과 관련하여 납세자뿐만 아니라 DGT 의 필수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일정을 설정한다.

- a.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제안된 APA 기간이 시작되기 12 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PMK-22 는 DGT 가 APA 신청서를 받은 후 다음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일정을 제공한다.
 - (i) 납세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APA 신청서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발행한다¹;
 - (ii) 납세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
 - (iii) 양국 APA 에 대한 조약 파트너 국가로부터의 성명서 접수;
 - (iv) 협상 과정;
 - (v) 쌍방 APA 협상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조약 파트너 국가로부터의 응답 부족으로 인해 DGT 에 의해 쌍방 APA 신청서가 중단 된 경우 일방 APA 신청서 제출;
 - (vi) DGT 가 APA 문서 / 상호 합의에 따라 APA 를 집행하기 위한 결정서 발행.
- b. **협상의 결론**– 협상 과정은 다음의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 (i) 일방 APA – 협상은 납세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 한 후 6 개월 안에 시작되며 협상이 시작된 후 12 개월 이내에 체결되어야 한다;

¹ Within the period of 1 (one) month upon receiving the application.

- (ii) 양방 APA – 협상은 조약 파트너 국가로부터 서면 APA 신청서를 접수 / 제출 한 후 24 개월 이내에 완료 되어야한다.

PMK-22 는 상기 타임 라인의 연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지정된 타임 라인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APA 가 "불일치"로 결정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6. APA 신청 철회

PMK-22 는 APA 신청 철회의 단계, 조건 및 결과를 명시한다. 기본적으로 APA 신청서 철회는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철회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DGT 는 APA 신청 철회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서면 진술서를 발행한다. APA 협상 절차가 시작된 후 APA 신청서 철회가 제출되면 납세자는 철회된 APA 신청서에서 다루는 회계 연도 동안 APA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다.

7. 협상 결과 : 동의 또는 불일치

APA 문서와 상호합의서에는 도출된 결론을 명시한 협상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위에서 설명한 협상 기한을 초과한 경우 외에, DGT 는 다음 상황에서 APA 승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 a.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제적 동기가 부족;
- b.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형식과 상이;
- c. 특수관계자 거래가 세금 부담을 최소화 목적으로 수행됨;
- d. 납세자가 제출한 정보 및 / 또는 증거 또는 진술이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 e. DGT 가 요구한 정보 및 / 또는 증거 또는 진술이 서면요구일 이후 14 일 이내에 제공되지 않음; 또한/또는
- f. 제안된 APA 기간 또는 롤백 연도에 적용되는 과세 연도에 대하여 CIT 세무조사 통지서가 발행됨.

8. APA 의 실행

PMK-22 에 따라서 납세자는 합의된 APA 를 이전가격정책에 구현하고 APA 적용 기간 동안 APA 실행 사실을 이전 가격 문서에 문서화해야한다.

또한, 납세자는 APA 시행에 관한 DGT 의 결정문이 발행된 후 1 개월 이내에 APA 로 인해 미지급된 CIT 신고서를 수정해야하지만 APA 에서 다루는 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PA 에서 다루는 기간에 대해 세무조사가 시작된 경우, DGT 는 CIT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된 CIT 세무조사통지서를 수정하여 APA 를 실행할 수 있다.

9. APA 의 평가 및 사법 심사

이전의 규정과 달리 PMK-22 하에서는 납세자가 DGT 에 연간 준수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규정은 APA 준수가 이전가격 문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PMK-22 는 DGT 가 material testing 과 유사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DGT 가 APA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DGT 는 APA 기간이 끝나기 전에 APA 의 사법 심사 또는 APA 를 취소할 수 있다.

APA 사법 심사는 또한 중요한 가정의 변화로 인해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 될 수 있다. APA 사법 심사 협상의 결과는 수정된 APA 문서 / 상호 합의 형식이다.

납세자가 실제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 정보 및 / 또는 증거 또는 설명을 제출하거나 APA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 또는 증거 또는 설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APA 평가 결과는 APA 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취소된 APA 에 해당하는 APA 기간 동안 APA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세무조사, 초기 증거 평가 및 / 또는 조사를 초래할 수 있다.

10. APA 갱신

PMK-22 는 이전 APA 의 사실과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면 1 회 연속기간 동안 기존 APA 를 갱신 할 수 있다. APA 갱신 신청은 기존 APA 기간의 마지막 해가 시작되기 전 12-6 개월 내에 규정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적용에 따라 DGT 는 APA 의 갱신을 새로운 APA 적용으로 취급한 이전 규정과 달리 material testing 을 직접 수행한다.

11. ALP 적용에 관한 지침

PMK-22 에는 ALP 적용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경우 기존 이전 가격 규정과 상이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가이드 라인에는 특별 관계의 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한 확장된 정의, " an arm's length point "또는 " a point within the arm's length range "사용, 각 비교 요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전 가격 방법으로 가치평가 사용, 이전 가격 방법 hierarchy 가 포함된다.

PMK-22 에서 제공된 이러한 지침은 APA 협상 중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규정과 상반되는 경우 이러한 지침이 어떻게 이행될지가 의문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어쨌든, 이 규정은 ALP 지침 적용에 관한 별도의 DGT 규정이 적절한 시기에 발행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12. 기타 고려 사항

PMK-22 는 APA 로 인하여, DGT 가 세무조사, 초기 증거 평가 또는 조세 범죄 수사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시작된 경우 DGT 는 APA 에서 다루는 거래에 대해 이전 가격을 수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이전가격이 APA 와 일치하지 않는 연간 CIT 신고서 제출;
- b. 규정된 일정 내에 APA 이행을 목적으로 연간 CIT 신고서의 필수 수정 신고를 제출하지 않음;
- c. 이전가격이 APA 와 일치하지 않은 연간 CIT 수정 신고서 제출; 또는
- d. APA 기간내 과세기간중 제출되지 않은 연간 CIT 신고서가 있음.

PMK-22 는 APA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APA 절차 중에 사용된 모든 납세자 서류는 납세자에게 반환되며 세무조사, 초기 증거 평가 또는 조세 범죄 수사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PMK-22 는 정상가격과 특수 관계자 거래 금액 차이가 배당금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적용을 받게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APA 이행에 대한 추가 지침은 별도의 DGT 규정에 따라 발행될 것이다.

13. 딜로이트의 견해

여러 국가에서의 경험에 따르면 APA 가 이전가격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별 보고 요구 사항과 BEPS 구현 및 채택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세무조사 활동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비즈니스에 더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PMK-22 에 따른 상세하고 정교한 지침은 환영할만한 조치이며 프로세스와 일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롤백” 의 확장된 적용 범위와 재도입은 매우 긍정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단순화되고 강화된 APA 프레임 워크는 다국적 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리 전략을 설계함에 있어 확실하게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Roy David Kiantiong	National Transfer Pricing Leader	rkiantiong@deloitte.com
Balim	Transfer Pricing Partner	bbalim@deloitte.com
Shivaji Das	Senior Technical Advisor	shivdas@deloitte.com
Sandra Suhenda	Transfer Pricing Director	ssuhenda@deloitte.com
Wara Kertiningrum	Transfer Pricing Director	kertiningrum@deloitte.com
Chi Young Bang Korean Services Group	Technical Advisor	bangchiyoung@deloitte.com
Dennis Yu Ying Li Chinese Services Group	Technical Advisor	yuyli@deloitte.com
Satoshi Minamino Japanese Services Group	Technical Advisor	saminamino@deloitte.com

You may also get in touch with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Tax Partners:

Melisa Himawan Tax Managing Partner	Business Tax	mehimawan@deloitte.com
Ali Mardi Djohardi	Business Tax	alimardi@deloitte.com
Cindy Sukiman	Business Tax	csukiman@deloitte.com
Dionisius Damijanto	Business Tax	ddamijanto@deloitte.com
Heru Supriyanto	Business Tax	hsupriyanto@deloitte.com
Irene Atmawijaya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atmawijaya@deloitte.com
John Lauwrenz	Business Tax and Merger & Acquisition	jlauwrenz@deloitte.com
Ratna Lie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lie@deloitte.com
Roy Sidharta Tedja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oytedja@deloitte.com
Turmanto	Business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turmanto@deloitte.com
Yan Hardyana	Business Tax	yhardyana@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s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 legal and related services.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sation”)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312,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 Chi Minh City,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Tokyo and Yangon.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s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